

#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8. 9. 20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18년 8월 31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8년 9월 7일

라. 상정일자: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 
제5차 행정위원회(2018. 9. 14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김인문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 . 주요내용

(단위:천원)

사 업 명	사 업 내 용	출연금액
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	영등포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구축·운영	62,215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광묵)

-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1)에 따라 2018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,
-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출연금 동의안이 제출됨.
- 이번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내역을 살펴보면,
  - 총 사업규모는 6,200만원으로서
  -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1,700만원, 차량유지비 및 인건비 등 4,500만원이 출연금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음.
- 이 사업은, 영등포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때 서로 다른 도서관에 해당 도서 자료 목록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절차가 “상호대차 서비스”이며, 이는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 자료를 서로 대여해줌으로써 도서 자료의 구입 예산 절약 및 서가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고,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이용자의 다양한 도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검토 결과,  
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
  -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 여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함
-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님. 따라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, 사업별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- 1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

의안 번호	6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18. 8.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 이유

“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”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가. 출연대상 : (재)영등포문화재단

나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제13조(운영재원 등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(운영 및 관리)

다. 사업내용

- 영등포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구축·운영

라. 출연 필요성

- 영등포구립도서관 이용자 도서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호대차서비스 구축 필요
- 구립공공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에 대한 국민의 수요 지속적 증가
- 따라서, 2018년 추경예산 출연함으로써 영등포구립도서관의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자가 가깝고 편리하게 도서 대출·반납을 통해 영등포구의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하고 책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마.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(소요예산)

- 범 위 : 영등포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· 관리비
  - 출연금액 : 62,215천원
    -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, 시설비 : 17,000천원
    -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, 인건비, 운영비 : 45,215천원
- ※ 2018년도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'2018 추가경정예산안 심사'를 통해 확정

3. 참고사항

○ 관련규정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기본재산의 조정)
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(운영재원 등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(운영 및 관리)

참 고 사 항

가.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 나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### 제20조(재정 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#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

-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- ② 구는 재단의 설립·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### 제13조(운영재원 등)

-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② 구청장은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라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# 제5조(운영 및 관리)

-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한다)이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며 도서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